

## 스웨덴의 교육행정과 교육복지

노 기 호  
(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 [ 특집 ]

2013년 새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복지'입니다. 이에 최신외국법제정보는 가장 중요한 분야로 언급되는 '주거', '보육', '의료', '교육'에 걸쳐 주요 외국의 법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I. 스웨덴의 교육행정체제 개관

1. 교육행정 조직
2. 학교 교육체제

### II. 스웨덴의 교육법 체계

### III. 스웨덴의 교육복지법제

1. 스웨덴 교육법
2. 스웨덴 의무교육 지원체제
3. 학업중단학생 지원체제
4. 이민자 아동 및 가족 교육지원체제
5. 장애학생 교육지원체제
6. 성인교육 지원체제

### IV. 결 론

## I. 스웨덴의 교육행정체제 개관

스웨덴은 국가 행정체제가 중앙정부 외에 18개의 광역자치단체인 랜(LAN)과 290개의 기초자치단체인 코뮌(Kommun)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강하게 인정되어 지방정부에게 과세권이 인정되고 있지만, 자치단체간의 지역적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균등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정 부분 중앙정부의 관여하에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높은 조세부담률과 중앙정부의 공공지출 정책을 통해 사회복지의 근간을 이루는 교육, 의료 등의 사회서비스는 대부분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그 밖의 주택, 노후연금 등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1. 교육행정 조직

스웨덴에서는 특정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아닌 교육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교육복지 내지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스웨덴의 모든 교육과 훈련은 정부의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의 책임하에 있지만 실제로 고등교육을 제외한 모든 공교육은 기초자치단체인 코뮌에 의해 조직되고 관리된다. 중앙정부에 의해 마련된 큰 틀의 교육정책이나 제도를 바탕으로 지방정부는 학교관리에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한다. 스웨덴의 교육행정조직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1)</sup>

#### 1) 중앙정부

##### (1) 교육·연구부

교육·연구부 직원은 약 200명 정도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비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관이나 정부가 바뀌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 (2) 스웨덴 국가교육청

스웨덴 국가교육청(Swed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은 교육영역에서 가장 큰 중

1) 홍세영, 스웨덴 교육복지의 발달과정과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북유럽 교육복지법제 연구세미나 자료집, 2013. 6, 11~12쪽 참조.

## 비교법 현안분석

양 교육행정기관이다. 여기에서는 학령 전 활동들(förskola/pre-school activities), 학령기아동 돌봄 서비스(school-age child care for 612 year olds), 기초학교(grundskola/compulsory school), 고등학교(gymnasieskola/upper secondary school), 지방의 성인교육에 대한 책임을지고 있다. 국가교육청은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안을 작성하고 점검한다. 특히 여기에서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의 질과 성과를 조사하고 사립학교(independent school)들에 대한 재원을 보조하고 사립학교들의 활동을 감독한다. 또한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고 대학의 연구지원, 교사들 훈련 등을 지원한다.

### (3) 스웨덴 학교 감사부

스웨덴 학교 감사부는 지방 행정기관과 사립학교들이 협행 법령들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감사하고, 이의 준수를 보장하는 기관이다. 학교 감사부는 학령 전 학교, 학령기 아동복지, 학교경영, 성인교육에 대해 책임을 지는 중앙기관이며, 이 기관의 목적은 모든 아동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학교 감사부는 모든 학교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독을 수행한다. 학교 감사부는 새로 신설된 사립학교들에게 허가증을 수여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다. 더욱이 고등학교에 대한 국가적 감독을 수행하고 사립학교가 재정을 지원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한다.

### (4) 특수교육과 특수학교를 위한 국가청

특수교육과 특수학교(special school for the deaf and hard of hearing)를 위한 국가청은 특수교육에 대한 공적 지원을 책정하고 할당하는 책임을 진 중앙의 교육행정기관이다.

### (5) 연구지원을 위한 스웨덴 이사회

연구지원을 위한 스웨덴 이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할당에 책임이 있다.

### (6) 성인교육위원회

중앙정부와 스웨덴 국회에 의해 구성된 성인교육위원회는 성인교육협회, 민중고등학교에 예산을 책정하고 부여하며, 재정적 기록 및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하여 정부에 보고한다. 또한 자유 성인학교를 평가하고 정책들을 점검한다.

## 2)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의 의무교육 기관인 초·중등학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에 의해 운영되며, 이는 전반적으로 학교교육은 지방정부의 역할에 해당한다는 해석에 근거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지역에 있는 학교에 등교하지만 타 지역의 학교에 진학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지방정부는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16세에서 20세 사이의 젊은이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데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 성인교육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에 성인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시행령에 의하면 성인교육의 내용은 개인의 욕구와 능력에 근간을 두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성인교육과 고등교육은 국가목표에 부응하도록 하고 있다.

## 2. 학교 교육체제

스웨덴의 교육체제는 취학전 교육(취학 전 학교와 취학 전 학급)과 의무교육(기초학교), 상급중등교육(고등학교), 고등교육(단과대학과 종합대학) 및 성인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2)</sup>

- i ) 취학 전 교육은 기초교육과 보육, 그리고 돌봄이 실질적으로 통합되어 지원된다. 4~5세 아동은 ‘취학 전 학교(föskola)’를 통해, 6세 아동은 ‘취학 전 학급(föskoleklass)’을 통해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1~5세 아동도 취학 전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비 상한제를 두어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 ii ) 의무교육(grundskola/기초학교)은 7~16세까지 9년 동안 지원되는데, 학교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또한 취학 전, 의무교육 기간 동안 이들 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서 ‘가정보육(familjedayhem)’, ‘열린 취학 전 학교(öppenföskola)’, ‘여가센터(leisure-timecentre)’, ‘열린여가활동센터(öppen fritidsverksamhet)’를 통해 별도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 정혜령, 스웨덴-외국의 교육안전망 사례-, 교육안전망지원센터 정책개발팀(편), 한국교육개발원, 2010, 1~2쪽 참조.

## 비교법 현안분석

- iii) 상급중등교육(gymnasieskola/고등학교)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무상으로 제공된다. 의무교육 이후 체제 밖에 존재하는 영 아웃사이더(young outsiders)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한편 다양한 개인 프로그램(IV), 청소년프로그램(KUP)을 운영하고 있다.
- iv) 고등교육(단과대학, 종합대학)은 공립의 경우에 무상으로 제공되며, 고등교육과 성인 교육 단계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으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다양한 재정지원 기구를 두고 있다.

이 외에도 학습장애를 가진 아동이나 이민자들이 보편적인 교육으로부터 제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이민자의 경우 모국어 교육과 스웨덴어 교육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 II. 스웨덴의 교육법 체계

스웨덴헌법(Grundlagen)하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관할되는 교육관계 법률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및 연구를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Högskolelag/SFS 1992:1434)’의 계열이며, 다른 하나는 ‘교육법(Skollag/SFS 1985:1100)’을 정점으로 하는 계열이다. ‘교육법’은 취학 전 교육을 시작으로 하여 의무교육인 기초학교, 그 후의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에 이르는 정규의 학교교육과 지적 장애자 교육 및 시청각 장애자 교육에 관한 특수학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스웨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관할되는 학교교육 외에도 여러 종류의 민중교육제도(folkbildning)가 존재한다. 그 하나가 학습스쿨(studiecirklar)과 민중대학(folkhögskola) 등이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법인조직 등에 의하여 조직되며, 공적 보조금을 얻어 운영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관할되는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이를바 제3의 교육제도라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의 ‘교육법’ 산하의 교육관계 법령의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스웨덴 ‘교육법’ 관계 법령의 체계

입법 및 제정	법령의 종류	개별 법령	법령집
국회(riksdagen)	법률(lag)	교육법(skollagen)	SFS
정부(regeringen) 교육 · 연구부(utbildningsdepartementet)	명령(förordningar) 교육과정(läroplaner)	기초학교령 고등학교령 지적장애자학교령 특수학교령 의무교육학교용 교육과정 (lpo94)	SFS 또는 SKOLFS
국가교육청 (statens skolverk)	규칙(föreskrifter) 권고(allmänna råd) 통고(meddelande)		

### III. 스웨덴의 교육복지법제

스웨덴의 교육복지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근거법령은 ‘교육법’이다. 교육법에는 학교교육과 관련된 상세 규정들과 함께 교육복지와 관련된 세부적인 여러 가지의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지적 장애자를 위한 학교와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이민자 아동의 스웨덴어 교육 및 교과내용 보충학습과 관련된 개별지도에 관한 규정, 장애자들을 위한 성인교육 등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기타 교육복지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법령에 근거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스웨덴 교육법의 체계와 내용을 개괄해 보고, 개별적인 교육복지 주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교육법과 기타 개별 법령상의 내용들을 검토해 본다. 다양한 교육복지의 범주에 포함되는 주제들을 모두 소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주요 주제라고 판단되는 의무교육제도,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제도, 이민자 아동 및 가족에 대한 교육지원제도, 장애 학생 교육지원제도, 성인교육제도 등에 한정하여 검토한다.

## 비교법 현안분석

### 1. 스웨덴 교육법(Education Law/Skollag(SFS No.1985:1100))<sup>3)</sup>

1985년 12월 12일 국회에서 승인된 스웨덴 교육법(skollag/SRF No.1985:1100)은 유치원 교육, 기초학교 아동보호, 학교교육 및 성인교육에 관한 국민들의 기본적 합의 및 국가에 대한 법적 효력을 담고 있다. 이 중 학교교육에 대한 규정에서는 학교교육 활동의 방향, 목적, 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스웨덴 교육법은 학교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적 사항, 학부모 및 학생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 교육법의 원칙은 일방적인 교육방식을 배제하고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참여하여 교육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려는 방향에서 교육 관련 당사자 스스로가 교육방식을 결정하는 적극적 참여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 및 지리적 지역 혹은 경제적 소득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스웨덴에 거주하는 모든 교육연령의 아동들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교육예산의 한도 내에서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스웨덴 교육법의 특징적인 점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양성 평등(jaemstaelhet mellan koenena)의 원칙(교육법 제1장 제2조 제1항)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며,<sup>4)</sup> 또한 학교 내 왕따현상 및 인종차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법률로 이를 제한하고 있다(교육법 제1장 제2조 제2항)<sup>5)</sup>는 것이다.

그리고 스웨덴 교육법은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학생에 대한 정보수집의 권한을 기초자치 단체인 코뮌에게 부여하는 한편, 그들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게 하고 있다. 즉 제1장 제18조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학생에 대한 정보의 편에서는 의무교육을 수료하였지만 아직 20세에 달하지 않은 근로학생을 위하여 코뮌은 적정한 교육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위하여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제18조 제1항). 그리고 이러한 코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혹은 중앙정부

3) 동 법률에 대한 영어원문은 <http://www.government.se/sb/d/2034/a/21538>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4) S. 2 All children and young persons shall irrespective of gender, geographic residence and social and financial circumstances have equal access to education in the national school system for children and young persons. The education shall be of equal standard within each type of school, wherever in the country it is provided.

5) The education shall provide the pupils with knowledge and skills and, in co-operation with the homes, promote their harmonious development into responsible human beings and members of the community. Particular attention shall be paid to pupils who need special support.

로부터 위임받은 당국은 코뮌의 정보 수집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8조 제3항).

스웨덴 교육법은 전체 15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은 일반규정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제도, 성인교육, 국가 교육제도 총칙, 의무교육의 대상이 아닌 청소년에 관한 정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기초자치단체인 코뮌의 학교조직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유치원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제3장은 취학의무 및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장은 기초학교(의무교육: compulsory comprehensive school), 제5장은 고등학교(upper secondary school)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6장은 지적 장애자 학교(school for mentally disabled), 제7장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special school)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8장은 사미(sami)족 어린이를 위한 사미학교(sami school), 제9장은 사립학교(independent school), 제10장은 보딩 스쿨(boarding school)과 같은 특수형태의 교육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1장은 코뮌의 성인교육 중 일반교육, 중등교육, 성인재교육, 제12장은 지적 장애자를 위한 성인교육(adult education for mentally disabled persons)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13장은 이민자를 위한 스웨덴어 교육(swedish for immigrants)을 규정하고 있다. 제14장은 학교보건, 제15장은 기타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 2. 스웨덴 의무교육 지원체제

스웨덴에서는 의무교육이 의무취학을 의미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웨덴에서의 의무교육(grundskola/compulsory school)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9학년까지 9년간이며,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취학 전 교육의 경우에는 기초교육과 보육 및 돌봄이 통합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4세에서 5세의 아동은 ‘취학 전 학교(föskola/pre-school activities)’를 통해, 6세 아동은 ‘취학 전 학급(föskoleklass/pre-school class)’을 통해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1~5세의 아동도 취학 전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비 상한제를 두어 학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학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의무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스웨덴 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다. 의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법 제3장과 4장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3장에서는 취학의무 및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규정해 놓고 있으며, 제4장에서는 기초학교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해 놓고 있다.

먼저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학의무 및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 개괄해 본다.

의무교육은 스웨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며, 해외에 영주하

## 비교법 현안분석

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이나 취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교육법 제3장 제1조 제1항). 또한 취학의무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체제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연결된다(교육법 제3장 제1조 제2항).

의무교육은 기본적으로 9년제의 기초학교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취학의무를 가진다. 다만, 지적장애나 청각장애가 있어 기초학교에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법 제6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장애자학교나 제7장의 청각장애자를 위한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교육법 제3장 제3조).

취학의무는 아동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가을학기부터 개시되며,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며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8세 취학을 허용할 수도 있다(교육법 제3장 제7조). 또한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6세부터의 취학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통상적인 의무교육 이동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교육법 제3장 제8조). 취학의무는 학생이 만 16세가 되는 해의 봄 학기에 종료되며,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만 17세가 되는 해에 마찬가지로 종료된다. 다만, 학생이 기초학교나 이와 유사한 동등한 학교에서 의무교육 연한 종료 이전에 의무교육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의무교육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지방교육위원회(styrelsen för utbildning)에서 시행하는 특별시험을 통하여 동등한 학력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면 취학의무는 완료된다(교육법 제3장 제10조).

의무취학 대상의 학생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단기간 결석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학생에 대하여 정학 등과 같은 규칙에 근거한 조치는 학생의 출석을 고려하여 취해져야만 하며, 단기간의 정학은 가능하다. 의무출석 일수는 일년에 190일을 넘지 않아야 하며, 하루 8시간, 1학년과 2학년의 경우에는 하루 6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교육법 제3장 제11조). 취학의무 대상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을 취학시킬 의무가 있으며, 보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학생이 취학의무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교육위원회가 보호자에게 벌금형을 명령할 수 있다. 이 벌금형은 구금형으로 대체될 수 없다(교육법 제3장 제16조).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초학교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스웨덴에서 기초학교의 교육은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기타 교육활동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학교에서의 교육은 고등학교(upper secondary school)에서 요구되는 교육의 기초를 형성하여야만 한다. 또한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는 특별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교육법 제4장 제1조). 기초학교의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며, 현대적인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교과서, 교육기구 등은 무상으로 제공된다. 다만, 극히 소액의 경비부담을 학생에게 부과할 수 있다(교육법 제4장 제4조). 그리고 기초학교에서의 급식은 무상으로 제공된다(교육법 제4장 제4조a).

기초학교에서의 의무교육 이행을 위하여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지역코뮌(home municipality)은 통학거리가 긴 경우나 교통상황이 열악한 경우 및 기능장애 등과 같은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인하여 통학이 어려운 경우에는 무상으로 통학을 위한 개별 교통서비스(skolskjuts)를 제공하여야 한다(교육법 제4장 제7조).

스웨덴에서는 비록 기초학교라고 할지라도 학생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지역의 기초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 그 지역의 지자체는 그 입학을 허락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의 무상교육을 받는다. 다만, 이 경우에 해당 지자체는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 지자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교육법 제4장 제8조). 또한 스웨덴에서는 9년간의 의무교육기간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년간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업수행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하여 학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교육법 제4장 제10조).

지적 장애자를 위한 학교(särskola/school for mentally disabled)의 의무교육연한은 10년이며, 이 학교에서의 모든 교육과정은 무상(무상교육, 무상급식, 교통비 지원 등)으로 이루어진다(교육법 제6장 제3조, 제4조). 그리고 이들 지적 장애학교의 학생들이 진학하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4년으로 되어 있으며, 20세가 되는 해 이전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교육법 제6장 제7조). 그리고 시청각 및 신체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의무교육 연한이 9년이며, 교육비, 교재, 교육도구, 급식, 교통비 등 모든 교육과정이 무상으로 지급되며(교육법 제7장 제4조), 이들 교육 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동시에 보습교육을 받을 수 있다(교육법 제7장 제6조).

### 3. 학업중단학생 지원체제

#### 1) 학업중단학생 지원 배경

스웨덴은 최근 교육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 중의 하나로 ‘영 아웃사이더(young outsiders)’의 존재를 들고 있다. 영 아웃사이더란 의무교육 이후에 학교교육을 받고 있지도 않고, 직업을 갖고 있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직업을 찾고 있지도 않은 한 마디로 체제 밖에 존재하는 청소년들을 일컫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급히 해결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업중단학생이라고 할 수 있다.

스웨덴 국가보고서(SOU, 2003)에 따르면, 영 아웃사이더는 1990년대 급증하였고 특히 16~19세 청소년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16~24세 청소년 중 2만 7,000여 명이 아웃사이더

로, 비자발적으로 교육시스템과 노동시장 외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상급중등학교에서 중도 탈락한 학생들이고, 특히 직업계열 프로그램에 있는 학생들이다. 직업계열에 있는 학생들은 주로 노동자 계급의 자녀이거나 이민자들의 자녀들이라는 점에서 평등을 교육의 제1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스웨덴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로서 스웨덴 정부가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 중 하나가 되고 있다.

### 2) 학업중단학생 지원 법률

(1) 결정할 능력과 복지 권리(Makt att bestämma–rätt till välfär(Regeringens proposition 2004/05:2)/the power to decide—the right to welfare/)<sup>6)</sup>

스웨덴 의회에서는 2004년 12월 ‘결정할 능력과 복지 권리’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서는 코뮌에게 의무교육을 받은 20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고용실태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목적은 기초자치단체가 이들에게 적절한 개인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에서는 이들에 대한 개인 정보가 반드시 수집되어야 하고, 코뮌들은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법률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의회 해결을 위한 제안(förslag till riksdagsbeslut), 제2장은 교육법 개정 법률 초안(förslag till lag om ändring i skollagen), 제3장은 사례와 대응(ärendet och dess beredning), 제4장은 배경(bakgrund), 제5장은 국가의 청소년정책 대상(den nationella ungdomspolitikens målgrupp), 제6장은 청소년 정책의 미래(den framtida ungdomspolitiken), 제7장은 모니터링, 분석 및 정보 획득(uppföljning, analys och kunskapsinhämtning), 제8장은 청소년 조사(ungdomsforskning), 제9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ungdomspolitik i kommunerna), 제10장은 위원회의 청소년활동(ungdomsstyrelsens verksamhet), 제11장은 국제적 협력(internationellt samarbete), 제12장은 청소년지원 프로그램(ungdomspolitiskt handlingsprogram), 제13장은 2000~2003년간의 청소년 정책의 평가(redovisning av ungdomspolitiken åren 2000-2003), 제14장은 법령의 발효

6) Regeringens proposition 2004/05:2 : Makt att bestämma - rätt till välfärd ; 동 법률에 대한 영어문현은 검색이 불가능하며, 스웨덴어로 된 원문은 <http://www.regeringen.se/sb/d/108/a/29806>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ikraftträdande), 제15장은 경제적 영향(ekonomiska konsekvenser), 제16장은 헌법상의 코멘트(Författningskommentar)로 구성되어 있다.

스웨덴 교육·연구부는 2002년도에 국가교육청에 영 아웃사이더에 대한 정보를 코뮌이 확보하고 있는지,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에게 어떤 개인적인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등 코뮌의 영 아웃사이더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책임(follow-upresponsibility)’을 파악하는 조사·연구를 위임하였고, 최종보고서를 2006년에 발간하였다.

#### (2) 개인정보처리법(Personal Data Act : 2006/39)<sup>7)</sup>

영 아웃사이더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코뮌의 활동으로서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법률(2006:39)이 2006년 3월 15일에 효력을 발생하여 시행되고 있다. 동 법률의 목적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동 법률은 전체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1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일반조항, 제2장은 범위, 제3장은 등록된 개인정보, 제4장은 정보처리 과정상의 안전, 제5장은 제3의 국가에 대한 개인정보의 전달, 제6장은 감독기관에의 통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개인정보법(1994:204)과 관련해서 동 법률은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sup>8)</sup> 동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연락처정보(주소, e-mail 주소, 전화번호), 교육, 직업, 서비스 형태의 현재 고용과 고용예정직, 코뮌으로부터 지원받은 개별조치, 시작지점 등이 등록되도록 하고 있다.

국가교육청의 분석에 따르면, 2005년 가을 ‘코뮌의 후속조치 책임’에 속한 청소년은 3만 2,556명에 달하였으며, 이들 중 거의 대부분인 90%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중도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중 약 절반인 1만 5,626명은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했지만 끝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코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 이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획득에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동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7) 동 법률에 대한 영문 원문은 <http://www.government.se/sb/d/3288/a/19577>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8) 동법 제9조 참조.

## 비교법 현안분석

### 3) 학업중단학생 지원을 위한 청소년프로그램<sup>9)</sup>

스웨덴의 광역 자치단체인 각 랜(LAN)의 노동위원회의 협약에 따라 1995년부터 코뮌들은 코뮌의 청소년 프로그램(KUP)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KUP에는 고등학교나 이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지 않는 20세 이하의 실업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고용 프로그램으로, 실직된 지 100일 이내에 직업소개소에 등록된 청소년들에게 고용을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교육적 요소가 결합된 실습의 개인성과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은 전일제로 시행되고 있다. KUP의 목표는 청소년들에게 학업과 직업으로 계속 이끌어 가는 교육경험이나 직업체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2005년 2월 1일 이후, 직업소개소는 구직활동과 안내를 시작했는데 코뮌의 후속조치 책임 담당자와 협의하여 청소년 개인들의 고용계획을 작성한다. 코뮌은 KUP에서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지식과 기술에 어떤 것이 있는지에 관한 증명서를 발행한다. KUP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고용된 것인 만큼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 보상은 코뮌이 지불한다. 고등학교 교육을 마치지 않은 청소년들은 한 달에 1,300크로나를 보상 받게 되고 고등학교를 끝마친 학생들에게 주는 보상액수는 코뮌이 결정하기 때문에 코뮌마다 다르다. 중앙정부는 코뮌에게 KUP에 대한 보조금을 지불한다.

## 4. 이민자 아동 및 가족 교육지원체제

### 1) 이민자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스웨덴어 교육지원

스웨덴 정부는 위와 같은 재정지원 외에도 성인 이민자들에게 스웨덴 언어와 사회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민자 대상 스웨덴어 교육(swedish for immigrants: SFI)’을 실시하고 있다(교육법 제13장 참조).<sup>10)</sup> SFI 교육의 실행은 지자체정부에서 책임지며, 지자체정부에서는 성인교육담당기관, 학습협회(study associations), 민중고등학교(folk high schools),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SFI 교육을 실시한다(교육법 제13장 제22조). SFI 수업시간은 총 525시간이지만, 학습자의 지식 등을 고려하여 조정된다. 비문해자 외국인에게는 일반적인 SFI 교육 외에 기초성인교육(읽기와 쓰기)이 함께 제공된다(교육법 제13장 제6조). 그

9) 정혜령, 전계보고서, 37쪽.

10) Swedish National Agency, Descriptive data on pre-school activities, school-age childcare, schools and adult education in Sweden 2006. Stockholm: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06.

리고 만 16~19세 이민학생들을 위해서는 SFI 교육이 고등학교에서 제공되는 개별 프로그램(individual programme)과 접목되어 제공된다. 보통 SFI 교육은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1단계는 비문해·저학력 이민자들을 위한 교육이고, 2단계와 3단계는 1단계 학습자들보다 빠른 속도로 학습이 가능한 이민자들을 위한 과정이다. 2004~2005년도에 SFI 교육에 등록한 학생 중에 1만 578명(22.0%)이 피난자(refugees)였고, 848명(1.8%)이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 이었으며, 3만 6,580명(76.2%)은 기타 이민자들로 나타났다. 이들 학습자의 평균연령은 32세였고, 18.4%는 25세 미만이었고, 12.8%는 45세 이상이었다. 2005년도 한 해에만 SFI 교육에 약 9억 크로나가 지출되었는데, 이는 전체 교육예산의 0.8% 정도를 차지한다.

## 2) 이민자 아동의 모국어수업 지원

스웨덴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5명 이상의 이민학생이 모국어로 수업받기를 원할 경우에 이 학생들이 재학하는 학교에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부과될 정도로 이민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잘 이루어지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sup>11)</sup> 스웨덴 학생과의 통합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이민학생들을 위해서 보조교사(support teacher)에 의해서 스웨덴어나 해당 학생의 모국어로 ‘학습지도(study guidance)’가 제공된다. 보조교사들은 이민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특별수업을 제공하거나, 일반수업상황에서 이 학생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고등학교에서는 만 15세 이상의 새로운 이민학생들을 위한 ‘이민자 기초코스(immigrant introduction course)’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웨덴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이 상급중등학교 졸업 전까지 스웨덴어를 제2언어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제2언어로서의 스웨덴어 교과목’이 개설·운영되고 있다. 이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은 대학입학시험에서 일반 스웨덴어 대신에 제2언어로서의 스웨덴어를 수험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이민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에서는 일부 교과목을 학생들의 ‘모국어’로 제공하고 있다. 이민아동들에게는 모국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며, 출신국의 문화·역사 등을 다룬 ‘모국어 과목(mother tongue studies)’이라는 과목이 정식교과목으로 인정되고 있다. 2003년 당시 스웨덴에서 모국어 과목은 60개 언어로 진행되었으며, 대부분 해당국가 출신자들이 담당하였다. 모국어 담당교사 중에는 자국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도 있

11) OECD, “What Works in Migrant Education? A Review of Evidence and Policy Options”, OECD Working Paper(EDU/WKP). NO.22. Unpublished document. 2009.

## 비교법 현안분석

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다수 있다. 모국어 과목을 위한 교재들은 출신국으로부터 확보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스웨덴 학교개선 국가청(swedish national agency for school improvement)’에서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 5. 장애학생 교육지원체제

스웨덴의 장애학생 교육의 기본원리는 장애가 있는 아동 및 학생을 통상의 일반학교인 기초학교에서 일반학생들과 함께 교육시키는 것이며, 상황에 따라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는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스웨덴 교육법은 학습활동이 곤란한 학생에게는 특별지원이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장 제2조 제2항, 제4장 제1조 제2항).

이러한 통합교육의 원리는 스웨덴의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철저히 지켜지는 기본원칙이며, 일반학생과 분리되고 구별되는 교육은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에 한정되고 있다.

스웨덴에서 장애학생이 일반 학교가 아닌 다른 별도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지적 장애자 학교나 신체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스웨덴 교육법은 장애학생이 지적 장애자 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적당한가의 여부를 지역 코뮌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장애학생이 입학하는 학교와 교육 프로그램의 결정에 있어서는 교육당사자인 장애학생과 보호자의 관여가 반드시 요구되고 있다(교육법 제3장 제4조). 그리고 해당 지자체의 이러한 결정들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일반 학생과 달리 차별받고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반영시킬 수 있다(교육법 제3장 제5조).

또한 의무교육기관인 기초학교의 학생이나 장애자 학교의 학생은 보호자와 학교설립자간의 합의에 의한 결정에 따라 최대 6개월의 기간 내에서 다른 학교로의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교육법 제3장 제6조). 이는 일반 기초학교에서의 적응이 어려운 장애학생이나,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다른 일반의 기초학교로의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의무교육은 기초학교와 훈련학교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7~16세까지 9년 동안 학교에 다니는 것은 의무이며, 의무교육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10학년에도 학습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한 의무교육을 시작할 수도 있다(교육법 제6장 제3조). 심각한 학습장애를 가진 아동의 경우 기초학교와 다른 훈련학교(training school)를 다니게 된다. 이곳에서는 교과목을 의무학교처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가르치는 대신에 다섯가지

영역(창의적 활동, 의사소통, 일상 활동, 체육활동, 사실에 대한 개념(conception of reality))으로 구분하여 가르치고 있다(기능 장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조 및 서비스에 관한 법률(LSS/SFS 1993:387).

의무교육인 기초학교를 수료하고 진학하는 고등교육의 경우에도 심각한 학습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위해 별도로 일반적인 고등학교 교육과는 구별되는 장애학생을 위한 고등학교의 교육이 제공된다(교육법 제6장 제7조). 물론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의 수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보호자가 이를 원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고등학교로의 진학도 가능하다(교육법 제6장 제8조).

지적 장애학생을 위한 고등학교는 일반적인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직업준비 훈련을 제공하고, 개인 프로그램 또한 제공하고 있다(교육법 제6장 제9조). 이곳에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3,600시간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교육기간은 4년으로 구성되어 있다(교육법 제7조 제2항, 제11조 제1항).

## 6. 성인교육 지원체제

스웨덴에서 교육적 측면에서 성인교육은 의무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교육법 제11장 제1조). 즉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의 경우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등 각 개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수준의 교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수준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모든 성인은 의무교육 수준의 성인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중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은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성인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교육법 제1장 제9조).<sup>12)</sup>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입학의 우선권이 부여되고, 교육비는 무료이다.

스웨덴 교육법에서 성인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은 제1장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되어 있다. 성인교육은 코뮌의 성인교육(municipal adult education/Komvux)(교육법 제11장), 지적 장애자 성인교육(municipal education for adult with learning disabilities/Särvux)

12) 스웨덴 교육법(Education Act, 1985:1100) 제1장 제9조는 성인교육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항 : 국가성인 교육시스템은 성인에게 개인의 희망에 따라 자신의 교육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최소한의 교육만을 받은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직업생활, 문화생활, 정치적 생활에 있어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교육은 어느 지역에서 제공되어지느냐에 관계없이 각각의 학교형태에서 동등해야 한다. 제2항 : 국가의 성인 교육 활동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 비교법 현안분석

(교육법 제12장), 이주자를 위한 스웨덴어 교육(swedish tuition for immigrants, SFI)(교육법 제13장) 등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세 가지 성인교육은 일반적 공공교육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1993년 이후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이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성인교육도 신규 법률(1993:800)로 보장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성인교육의 목적은 성인 각 개개인의 요구사항이 교육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교육법 제11장 제2조). 특히 다수의 성인교육 참여자는 성인 교육을 통해 직장에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문화 및 정치부문 생활의 다양화를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성인 교육은 전국적으로 동등한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결과 또한 동등하게 인정받고 있다(교육법 제11장 제17조). 성인교육과정에도 교육법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으며 특히 교육 참여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왕따현상 방지 및 인종차별에 관한 법률(1997:1212)을 1997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성인교육 중 코뮌의 성인교육(Komvux)은 코뮌과 지방정부(county councils/Landsting)가 주요 주체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자 성인교육 및 이주자를 위한 스웨덴어 교육은 전적으로 코뮌이 책임을 지고 있다(교육법 제11장 제8조~제12조). 단 예외조항으로 코뮌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장애자교육 중 특정교육을 책임지는 법률(1996:566)이 운영되고 있다.

## IV. 결론

이상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스웨덴 교육복지법제의 특징 및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웨덴은 국가의 정치체제 및 기본 방향과 관련하여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전통으로 말미암아 모든 국민은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사회·경제적 배경, 문화적 배경, 성적 취향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교육체제를 통하여 실천해 오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나 이민자의 학생 등과 같은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마련하기 이전에 이미 근본적으로 교육체제 자체를 통해 균등한 교육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교육체제 자체가 교육복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스웨덴의 교육이념은 철저한 평등의 추구에 있으며, 이는 스웨덴 헌법과 교육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이면 누구나 취학 전 교육에서부터 대학교육을 지나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서든 동등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결코 개인적인 환

경에 따라 교육을 제공 받을 기회가 제한받지는 아니한다.

셋째, 스웨덴 교육법은 모든 교육은 공교육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특수한 사립학교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코뮌)는 공교육을 실현할 법적 책임과 의무를 진다. 그리고 거의 모든 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의 학생이라 할지라도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넷째, 스웨덴에는 전체 국민의 10%가 넘는 이민자와 그 가족의 아동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 있어서도 인종적, 민족적 배경으로 인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으며 스웨덴 국민과 동등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어의 교육과 모국어에 의한 학습내용의 교육은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철저한 사회적 배려를 알 수 있으며, 교육복지 전형의 모습을 보여 준다.

다섯째, 스웨덴의 교육복지법제는 특별히 교육복지법령이라고 소개할 만한 개별적인 법령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며, 교육에 관한 기본법에 해당하는 스웨덴 교육법에서 교육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을 두고, 나아가 교육복지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다. 교육기본법에 이와 같은 교육복지 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교육은 당연히 복지적 관점에서 시행되어야 할 정책 사항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우리의 교육복지 법제의 확립에 있어서는 교육소외계층이나 취약집단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체계 및 법령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근본적으로 교육체계 전반에 평등의 원리가 구축되어 누구에게나 교육기회의 평등과 마찬가지로 교육결과의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홍세영, 스웨덴 교육복지의 발달과정과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북유럽 교육복지법제 연구세미나 자료집, 2013. 6
- 정혜령, 스웨덴-외국의 교육안전망 사례-, 교육안전망지원센터 정책개발팀(편), 한국교육개발원, 2010,
- Swedish National Agency, Descriptive data on pre-school activities, school-age childcare, schools and adult education in Sweden 2006. Stockholm: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06.
- OECD, "What Works in Migrant Education? A Review of Evidence and Policy Options", OECD Working Paper(EDU/WKP). NO.22. Unpublished document. 2009.